

#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』의  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』에 대하여  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저출생·고령화가 심화되면서

인구 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,

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

인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.

□ 이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구 관련

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 활동인 인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

안 제3조에는 인구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했고,

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,

안 제5조에는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
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
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